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상 사업자	연수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강의실 규모	연면적:	m ²
	강사인원 명		

「유통산업발전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 1부 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1부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부장관 확인사항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	➔	접 수	➔	확인 및 서류 검토	➔	결 재	➔	통보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유통연수기관 지정신청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